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한울요양원

Contents

- 01 노인인권의 이해
- 02 노인 권리보호
- 03 노인인권과 학대와의 관계
- 04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란?
- 05 노인학대의 유형 및 노인학대 예방
- 06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 방법

노인인권?

인 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노인인권 의 이해?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노인인권?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 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노인권리보호?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Q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일부개정령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추가 (2022. 03. 22. 시행)

16. 제39조의6제2항제16호 「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Q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2호).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 개입의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정의 !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유형 !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신체적 학대?

대표적 행위

-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림
- 제한된 공간에 가둠, 거주지출입 통제
- 신체를 강제로 억압
- 물건을 던지거나 흥기로 위협
-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 식사, 음료 등 단절시킴
-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임
- 원치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일(노동) 강요

예측징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바깥출입이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정서적 확대?

대표적 행위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함
- 말을 걸지 않고 대화 하지 않음
- 일상생활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함
- 지인 및 가족과의 사회활동, 연락 등 방해
-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
(ex. 죽이겠다, 시설로 보내버린다, 집에서 나가라 등)
- 고함, 욕설, 모욕
- 자존심을상하게하거나창피수치심을느끼게함
-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킴

예측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성적 확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 학대?

대표적 행위

- 강제적인 성관계나 강요, 시도
-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 일부를 만짐
-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노인의 성적부위를 노출하여 옷·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시킴
-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 학대행위자의 성적행위나 음란물을 보게 함

예측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대표적 행위

-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공적 부조 급여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
- 빌린 돈 및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
- 노동에 대한 대가 미지급
- 허락 없이 신용·명의 도용하여 이익을 취함
-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 날조
- 부양 전제의 재산상속 약속 및 증여 후 부양 의무 미이행
-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

예 측 징 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대표적 행위

<방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 방치
-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함
- 안정된 주거공간 제공하지 않음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지원 하지 않음
-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 혹은 소홀히 함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ex.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음

예측징후

<방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노인 주변 환경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환경
-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유기?

대표적 행위

- 노인과 연락, 왕래 두절
- 노인을 시설·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 왕래 두절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 거부

예측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
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
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기방임?

대표적 행위

<자기방임>

- 노인이 처치 및 약 복용 등 의료적 치료행위 거부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음
- 노인이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음
- 알코올·약물 남용 및 자살시도

예측징후

<자기방임>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인 스스로 함
- 자살을 시도함

노인학대의 예방?

1. 명확한 기준을 설정,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한다.
2.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 관련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
4. 인권보호지침을 비치,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분기별 정기적 실시한다.
5.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관련기관에 신고,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6.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 해결한다.
7. 치료, 요양의 목적 이외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노인학대의 예방?

8.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9.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학대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10.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욕설,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고 존대어를 사용한다.
11.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담당직원 및 종사자에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12.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지체없이 상급자에게 보고, 학대의 심사례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13.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062-655-4155

보건복지부 콜센터 노인학대 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의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신고)

2. 조사와 사정

3.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 조치

4. 평가와 사후 조치

노인학대 처벌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기준

-노인학대법적처벌기준:노인복지법,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형법적용가능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징역또는
7,000만원이하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박행을
가하는 행위”



노노인에게
상성적 수치심을 주는
상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노노인 유기 및
의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 벌금

노인학대 처벌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학대법적처벌기준:노인복지법,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형법적용가능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벌금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벌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이하과태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할 때는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및 주요정보에 대해 설명

신고자 비밀보장은 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3항』

- 제 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복지법제57조』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절차는?

